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0. 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1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4년 9월 17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2014. 9.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이철호)

가. 제안이유

- 민간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

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및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는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국민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학교, 항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수준높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있음.

○ 1994년 관련법 제정과 함께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한 민간투자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미 67조 원이 넘는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공공관리투자센터, 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으로 30건¹⁾의 민간 투자사업을 검토·추진중에 있었으며, 강남, 동대문, 마포, 양천구 등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도 현재 BTO²⁾ 방식의 민간투자가 선도적으로 이

1) 민자주차장 12건, 도로 8건, 도시철도 10건(중·경전철)

투어지고 있는 상황³⁾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구에서도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도로, 주차장, 컨벤션 및 문화복지시설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짐.

- 종합적인 검토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제10항에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전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구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2) BTO[Build-Transfer-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10~30년)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3)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강남구에서는 논현1~3호, 대치1호, 청담1호 민자주차장, 동대문구에서는 주럭가 공동주차장, 동대문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 마포구에서는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양천구에서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주차면 확대건설사업, 서대문구에서는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 호
----------	-------

제출연월일 : 2014.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간자본을 이용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다. 위원회의 기능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7.31~8.20,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재정국장, 관련 사업별 소관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관련 사업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제8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며, 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별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유지)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